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1월 25일

황학동장



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권 *훈	권 *훈 1972-01-25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7길 (황학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1-25
장 *수	장 *수 1977-12-18	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(황학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1-25